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8일

청라3동장인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빈	정 *빈 1998-03-11	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석로17번안길 (청라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0-14